



민원합리성 검토를 통하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불편, 민원을 해결한다

-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

□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(이하 국무총리실)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※ 인터넷(국민신문고, 국민제안, 청원24)과 우편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해결·반영하는 민원 처리 체계 운영 중

□ ‘이재명 정부’ 출범 이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‘민원의 합리성 여부’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

○ ‘이재명 정부’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로 접수된 민원(제안, 청원 포함)은 총 41,429건이며, 접수 민원은 「민원처리법」, 「청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.

○ 11.27(목), 민간전문가 및 소관기관이 참석하는 ‘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’를 통하여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, 자동차 차대 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(70,000원→28,500원)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으며,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

□ 주요 개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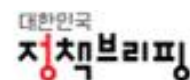
○ (주택연금 가입시 실거주 요건 폐지) 주택소유자가 병원·요양시설 등 입원(소) 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 폐지

- (차대표기 수수료 인하)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량 소유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인상한 자동차 차대번호 표기 비용 인하(7만원 → 28,500원)
- (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허용) 적제용량 12톤~20톤 덤프트럭도 뒷바퀴 조명등을 설치 허용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 정비
- (가족관계등록부상 행정오기 정정) 본인 귀책사유 없이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행정상의 잘못된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
- (공항 내 택시·버스 승강장 분리) 공항버스 승차장에 승용자, 예약택시 등이 뒤섞여 혼잡과 안전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와 버스 진입도로 분리

※ 상세 내용은 붙임 '2025년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(5건)' 참고

-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원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	책임자	팀 장 이용하 (044-200-2818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①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

기존 주택연금 가입 후 병원이나 요양원 입소하는 것은 괜찮지만, 병원·요양원에 입원(소)해 있으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

→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

개선 1 주택자가 입원 등 특별한 사유*에 해당하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

* ① 병원, 요양시설 등에 입원(소), ② 자녀 등에 의한 봉양으로 타 주택 장기체류, ③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, ④ 격리, 수용, 수감

② 차대표기 수수료 인하 한국교통공단

기존 자동차 안전검사시 의무화된 차대번호 타각 비용이 '25.4월 과도하게 인상되어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 소유주에게 부담

→ 최근 10년간 18,500원을 유지하던 비용을 '25.4월 7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

개선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량 소유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인상한 자동차 차대번호 표기 비용을 인하(7만원 → 28,500원)하여 경제부담 완화

* 수동타각 방식을 정밀타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금액의 상승은 유지

③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일괄 허용 국토교통부

기존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화물차(덤프트럭)뒷바퀴 조명등은 「자동차관리법」을 따르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을 따르는 「건설기계안전기준 규칙」에 덤프트럭(12~20톤)의 뒷바퀴 조명등 설치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어 설치 불가

→ 동일 자동차 인데도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는 허용하는데,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건설기계 검사시 위반사항으로 지적되는 문제 발생

개선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트럭에 뒷바퀴 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으로 우선 지시하고, 향후 관련 규칙 개정 추진

④ 가족등록부 상 행정오기 정정 법무부

[기존] 혼인신고 시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한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'(시아버지)이OO을 (남편)이OO로 직권정정'이라는 이력을 삭제 할 수 없음

→ 현행 「가족관계등록규칙」(제17조·제20조)과 「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」(제2조·제3조·제6조)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법령 개정이 필요

[개선] 본인 귀책사유 없이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행정상의 잘못은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

* 「가족관계등록법」 개정안 2건(12224 강승규 의원안*, 12581 김재섭 의원안**) 발의

⑤ 공항 내 택시.버스 승강장 분리 한국공항공사

[기존]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항버스 승차장에 호출택시가 진입하여 공항버스의 승·하차를 방해하고, 승객안전을 위협하며, 택시를 호출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은 택시승강장 장시간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 요청

[개선] 공항버스 승차장에 승용차, 예약택시 등이 뒤섞여 혼잡과 안전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와 버스 진입도로 분리하고, 택시 승강장과 호출택시 정차장 분리

→ 도로 완전분리 후에도 승용차 등이 버스진입도로에 무단으로 정차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지정 등을 위해 서울시와 추가 협의 예정